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합헌 (2010년 5월 27일) 판결에 따른 제 문제

## 1. 인간생명... 언제부터?

최근 초기인간생명에 관한 문제들이 다시금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배아를 불임이나 질병 치료 연구에 이용하고 5년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도록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인간생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초기 배아는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 결정은 착상이나 원시선 발현 이전의 배아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간 생명의 시작점은 수정이 이루어진 때라는 생물학적 사실을 외면한 것일 뿐 아니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통념을 무시한 비윤리적인 결정이다. 다만 배아에 대한 배아생성자의 결정권만을 인정했다. 우리 모두 배아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음을 생각할 때 잘못된 판결임에 틀림없다.

착상이나 원시선 발현은 배아가 수정된 이후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것이지, 착상이나 원시선 발현을 전후해서 생명체의 본질이 달라진다거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착상이나 원시선 발현 과정 등 성장단계의 특성을 가지고 배아가 인간 생명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다. 원시선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므로 그 발현 시점을 단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도 없고 개체에 따라서는 발현 과정에 시간차가 있다.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모든 성장 과정에서 차별 없이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한다. 인간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 것도 어머니 것도 아닌, 새로운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므로, 온전한 인격으로서 존중받고 대접받아야 하며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가톨릭적 입장에서는 자궁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발생되는 시점, 뇌파가 발생되는 시점, 고통 감지 능력, 자궁 외 생존능력, 인체 골격 형성 등 특정한 발달 단계를 기준으로 정해 인간 생명을 판단



구인희 마리아요셉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

하는 다양한 입장이 있다. 심지어 시간의식이나 자아의식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기에 신생아와 유아도 인격을 갖춘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생명의 시초를 달리 보는 데는 종교적 믿음, 사회적 가치관, 경제적 요인 같은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단계별 구분은 임의적인 것일뿐 배아의 발달 과정은 질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연속적 과정이다. 그러한 과정 전체가 확정되는 시점은 수정 시점이며, 이 시점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생명권이 보호돼야 한다.

수정란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 생명체로서, 수정란으로부터 시작된 초기 배아는 연속적 성장을 통해 결국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다. 수정란, 배아, 태아, 신생아 등은 성인이 돼가는 하나의 과정이며, 점진적 발생의 과정에서 각 단계는 다음 단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다른 단계보다 더 중요하고 더 결정적이고 더 근본적이라고 할 만한 순간은 없다.

자궁에 착상시키면 인간으로 자라날 인간 배아를 인위적으로 체외에서 만들어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것은 난치병 치료 연구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또 다른 생명을 희생하고 도구화하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나 공리주의적 타산이 앞서는 윤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데 더 적합하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목청 높여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정책도 그들의 입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 2.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률의 어제와 오늘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에 부합하는 법적 규율을 만들기보다 생명과학 연구를 우선 육성하려는 의지를 내세운 결과의 하나다. 정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해 제정한 법이라고 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법률이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언제부터 시행돼 왔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정부의 주도 하에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날치기 입법을 강행한 덕분이다. 이 법은 인

간배아를 물질로 규정, 인간배아 연구를 허용하고 이를 바 난자매매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해지자, 법 제정이 추진됐다. 2001년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생명윤리기본법 첫 시안은 인간 배아의 체세포 핵이식과 불임치료 외 배아 생성 행위를 금지했다. 인간생명의 존엄성 수호와 생명과학 연구의 필요성에서 생겨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 법안이었다. 그러나 시안이 발표되면서부터 상황은 변했으며, 과학계는 생명과학의 발전을 저지하는 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경제 산업적인 동기와 생명 윤리적인 입장 사이에 첨예한 대립과 논쟁이 거셌다. 정부는 희귀·난치병을 전제로 할 때는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 법의 모순은 2005년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을 계기로 명백히 드러났다. 이 여파 끝에 생명윤리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이 개정안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중 생명윤리계 위원 7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다.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어진 2008년 개정안도 2년여 간 준비해왔던 안이 아니라, 대안법률안이 제17대 임시국회에서 출속 통과됐다. 그 사이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 등 종교계 등에서 제기한 의견과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연이어 무산됐다.

생명윤리법은 올해로 세 번째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인간존엄성 수호와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헌법재판소 또한 이 법이 헌법에 일치한다고 판결, 인간생명 수호 노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배아연구,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등 비윤리적 현행법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인간 대상 연구 같은 부분을 보완하는데 그치고 있다.

## 3. 배아 생명권의 법적인 측면

교회는 생명권이 어떤 실정법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자

연법이라고 가르친다. 인간 생명은 존재론적 질서의 최상위에 있으므로 모든 가치질서 중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변하지 않는 보편타당한 자연법에 근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생명윤리법은 인간 배아를 ‘세포군’이라고 정의해 사물화시키고 하나의 도구로 격하시키고 연구를 위해 희생시킨다.

체세포 복제배아연구 또한 배아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체세포 복제배아를 인위적으로 생성해서 죽이는 과정을 전제한다. 즉 죽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인간 체세포복제배아도 수정배아와 동일한 존엄가치를 지닌 인간생명체이다.

어떤 이는, 인간의 체세포핵이식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생성된 배아가 아니므로 실험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체세포핵이식으로 만들어진 배아도 자궁에 착상시키면 우리와 똑같은 성인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체세포핵이식기술로 생성된 배아는 단순한 기술의 결과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수정배아와 동일한 존엄성을 지닌 인간생명체다.

배아는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생명체이므로, 실질적 정의의 헌법 가치에 비추어 보면 성인 등에 비하여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필요한 생명체이다. 인간 배아인 이상 그 인간 배아가 착상전의 배아이든, 원시선 발현 정도에 차이가 있는 배아이든, 인공수정 후 체외에 보관 중인 배아이든, 인간의 체세포핵이식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이든 인간생명체가 아니라고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체외수정배아를 만들지 말도록 권고하며, 이미 생성돼 살아있는 배아는 자연적 수명이 다 할 때까지 보호하도록 권한다. 현 상황에서는 이미 생성된 잔여배아를 입양시켜 출산할 수 있을 때까지 냉동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더 이상 생물학적 친모의 출산 가능성이 없고, 배아 입양의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기한의 냉동을 통한 과도한 기계적 개입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일종의 무의미

한 연명이 아닌지도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 또 배아에 대한 결정을 부모에게 맡김으로써 배아의 생명권을 부모가 좌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조항도 비윤리적이다.

#### 4. 생명윤리 관련 법률의 제정 의도와 드러난 문제점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생명윤리 관련 법률들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외 ‘모자보건법’과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관한 법, 의료법 등 다양하다. 가톨릭교회는 인간생명 존엄성의 수호와 가치 증진을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모자보건법’ 등 생명윤리 관련 법 제·개정에 지속적인 힘을 기울여왔지만 실제 입법에 끼친 영향력과 사회 연대 노력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생명윤리 관련 법률의 명칭이 제정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모순점도 보인다. 생명윤리법 제정은 우선 급격한 생명과학 발전으로 야기된 생명윤리 관련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규제하는 국내 최초 법이라는 점에서 환영받았다. 그러나 처음 의도와 달리 제정은 물론 개정과정은 모두 일부 입법 관계자들에 의해 졸속 진행됐다. 무엇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그 이름에 부합하는 법규를 만들기보다 생명과학 연구를 육성하려는 입법적 의지가 우선되는 모순을 보였다. 생명윤리법이 아니라 생명공학육성법 혹은 연구증진법이라는 비판이 연이어 쏟아졌지만, 정부는 생명과학 연구 분야에 거대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데 급급했다.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면 그 목적이 우선 생명의 존엄성 보호와 존중에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은 처음부터 생명과학기술 개발과 이용 여전 조성 등의 이중 목적을 밝혀 법의 진정성을 그르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불법이다. 모자보건법도 그 명칭과 달리 낙태를 합법화함으로써 모순을 보이고 있다. 낙태죄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이르기 전에 ①살해할 의도로써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②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모자보건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질병 사망 등을 예방하

기 위한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서 국민보건 행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정취지와 달리, 모자보건법 14조는 태아를 살해하는 낙태의 허용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269조)은 낙태하는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 등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그러나 모자보건법 14조는 임신 24주 이내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근친상간 및 '임신의 지속이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산모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해석하기 나름이므로 이 규정이 낙태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모자보건법 28조는 '이 법에 따라 낙태수술을 받은 자와 한자는 형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아예 처벌 법규를 무력화하고 있다. 낙태죄가 보호하려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인데 실생활에선 산모의 의지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낙태 확산의 원인이 됐다. 낙태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다. 모자보건법은 유신 시절인 1973년 국회가 아닌 비상 국무회의를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법의 효력 자체도 의문시된다.

## 5.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올해 5월 10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은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의 연구, 기관위원회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적 논쟁의 중심이 되는 인간배아 연구와 체세포복제연구,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제공 문제 등 생식세포 기증 문제를 포함하는 조항은 그대로 놓아둔 채, 오히려 단성생식 연구의 근거규정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으며, 인간을 대상으로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을 허용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넣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미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국가연구비지원으로 많은 연구자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배아의 파괴와 인간 존엄성 훼손이라는 윤리적 논란이 있는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전면 금지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에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문제되는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의 조항들을 살펴보자.

제2조에서는 배아를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으로 정의하여 배아를 물질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배아는 단순한 세포덩어리 세포군이 아니라 하나의 존엄성을 지니는 인간생명체임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제4조 적용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고 하여 생명윤리법을 다른 법의 하위에 놓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규범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다른 법규에 의해 이 법의 목적과 취지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5조 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에서는 임신 외의 목적의 배아 생성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26조에서는 정자제공자·난자제공자·인공수태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를 구분해 기술함으로서 본인의 임신이 아니라 타인의 임신을 위해 난자를 채취하는 것이 가능하며, 타인의 배우자를 위해 정자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대리모를 이용한 임신이 가능함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생식세포를 제공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아 자신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이나 친족 친척 등으로부터 기증받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가족이 기증자가 되는 것은 근친상간 상황과 유사하며, 가족관계의 질서와 조화를 해칠 소지를 다분히 지닌다. 또한 압력에 의해 기증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금전적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 태어나는 아이의 행복권 침해를 할 수 있다.

제26조 ②항 서면동의에서 임신 외의 목적으로 잉여배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것은 임신 외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해서는 안 된다고 한 제25조 ①항의 규정에 모순된다.



낙태아 묘

배아실험을 위해 잔여배아를 연구용으로 기증할지 여부를 인공수태시술대상자와 해당배우자 즉 배아의 부모에게 묻는 서면동의 서식인 배아생성동의서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배아는 부모와 독립된 한 개체로 보아야 하며, 한 생명을 파괴할지 여부를 제3자인 부모를 동의권자로 규정하여 묻는 것은 부모를 마치 배아 생명의 소유권자인 것처럼 인정하는 것과 같다.

제27조는 임신 외 목적의 배아 생성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임신 외 목적으로 잔여배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것은 모순된다. 무엇보다 잔여배아가 하나의 인간생명체임을 인식하고, 제삼의 불임부부에게 입양시켜서 아기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찾아보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제29조는 타인의 임신을 위해 난자를 제공하고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른바 난자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제31조는 잔여배아 연구를, 제32조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의 승인을, 제33조는 체세포복제배아 등의 연구를 허용하고 있어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조항이다. 그러한 연구들은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치료목적의 배아연구와 복제목적의 배아연구는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단지 생식세포

**생명윤리법은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생명과학 기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자체의 질환과 배아 자체의 치료 목적을 위한 연구만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국가위원회와 기관위원회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불합리성을 보이며, 개정안 내용 또한 연구 등에 대한 동의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사회, 경제적 취약 계층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모순을 드러낸다. 유전자검사 등에 있어서도 낙태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이미 생성된 잔여배아는 입양시켜 출산할 수 있을 때까지 냉동을 통해 보호하거나, 과도한 기계적 개입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일종의 무의미한 연명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제대로 모태에 착상되어 생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간으로 성숙될 수 있는 배아는 자신을 대변하거나 방어할 길이 없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무고한 인간생명이다. 그러한 배아를 희생시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여성들을 난자 제공 수단으로 삼아 감행하는 연구는 결코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 경제 논리에 입각해 이러한 연구를 뒷받침하는 정책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윤리법은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생명과학 기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 6. 외국의 생명관련법(예: 독일 – 배아보호법과 유럽연합의 줄기세포 연구)

유럽에서 영국과 벨기에를 제외하면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연구 목적의 인간배아의 생성을 금지하고 있다.

배아연구에 관하여 유럽연합의 입장을 표명한 문서로는 1997년 4월에 체결한 ‘인권과 생명의학에 관한 협정’(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이 있다. 이 협정 18조에서 배아연구를 허용하는 경우 배아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해야 하며, 연구 목적의 인간 배아의 생성을 금지할 것을 명시했다.

독일에서는 인간 배아를 엄격히 보호한다. 배아보호법에 의해 ‘치료용 복제’가 금지되고 있고, 또한 2002년 7월 발효된 줄기세포법에 의해 인간배아 줄기세포의 수입과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원산지의 법에 적합하게 획득되고 배양되거나 그럴 목적으로 냉동 보관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한다. 해당 배아는 임신목적으로 체외에서 수정되어 최종적으로 더 이상 임신의 목적으로 공여될 수 없는 잔여수정란에서 얻어진 줄기세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입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배아의 수입과 사용에 대한 금전적 대가 또는 특별한 경제적 가치를 지불하거나 지불하기로 약정하지 않아야 한다.

## 7. 우리는 왜 배아를 보호해야 하는가?

무고한 배아의 희생을 막고 보호함은 곧 인간 생명의 존엄성 훼손을 막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격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존재는 모두 존엄성을 갖는다.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인간배아는 중대한 도덕적인 단절이 없이 실제의 인격체 특성을 지니는 인간존재으로 발달하는 인간 생명체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 배아는 인간에 준하는 존엄성을 지닌다.

인간배아의 생명권은 그 존재의 초기 단계일지라도 경제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배아의 편에서는 다소 간 견딜만한 제한에 관한 일이 아니라, 존재 전체에 관한

일이다. 점진적인 보호가치의 개념은 배아에게는 아무런 보호도 되지 않는다. 인간 존엄성은 육체의 성장이나 신체적 혹은 지적 능력과 더불어 커지고 경우에 따라 다시금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 생명권은 개인의 유용성이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신생아의 능력은 거의 무(無)에 가깝다. 유아는 타인의 도움과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생명권은 발달 상태와 무관하게 성장에 따라 점점 더 신장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게 인정받으며, 늙어서나 병석에서 혹은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경감되지 않는다.

배아는 수정 이후의 연속적 발생 과정에 있어서 착상, 원시선 발현 등의 명확한 시기적 구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개체에 따라서도 각자 발생과정상 시차가 있어 천차만별이므로, 수정 이후 그 어떤 시점도 연속선상의 생명 현상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착상 여부, 원시선 발현 정도 등에 관계없이 배아는 수정 시부터 인간생명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공수정 후의 잔여배아는 냉동상태에 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자연적으로 죽거나 폐기될 운명이므로 난치병 치료 연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냉동잔여배아가 현실적 여건상 체외에서 자연적 죽음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자연사하기 전에 실험 대상으로 삼아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전혀 의미가 다른 것이다. 배아의 입장에서도 결코 그러한 죽음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자연사를 선호할 것이다. 그보다는 이를테면 입양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배아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미 태어나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배아의 생존이 달린 연구에 대해 논할 것이 아니라, 배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만일 초기 배아라면 어떠한 대우를 받기를 바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명 자체와는 무관한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견주어 배아의 생명권을 저울질함은 임의적인 불평등한 대우이다.

배아는 스스로 착상할 능력도 없고 자궁에 착상되어 영양을 공급받아야 성장 가능한 의존적 존재이지만, 원

래 인간은 그 누구나 영양섭취와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의존적 존재이다. 신생아도 스스로 먹이를 마련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의존적 존재이다.

또한 배아가 모체 내에 있는 경우에만 성장 발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간생명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같은 배아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에 있는 배아는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 단순한 세포덩어리고 모체 내에 있을 경우에만 인간이라는 생각은 인간의 정의를 위치나 환경에 따라 달리 규정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변할 수 없으며, 모체 내에 있든 체외에 냉동 보관되어 있든 배아가 동일한 인간 생명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결과적으로 현실적 여건상 착상되어 성장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배아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 타인의 선택에 따라 자궁에 이식 여부가 결정되어지고 그 결과 배아의 생명이 보호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한다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오히려 모체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잔여배아가 모체에 이식된 배아에 비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실험에 이용되는 배아들은 미래의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모를 그런 불확실한 과학연구를 위해 희생된다.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으며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길이 없는 무고한 배아가 살해되는 것이다. 불치병 환자의 치료를 돋기 위한 연구는 도덕적으로 공정적 평가를 받아 마땅하지만,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인위적 조작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옳지 않다.

배아의 연구에서는 배아의 생명권과 불확실하지만 연구를 통해 언젠가 먼 훗날 치료가능성이 열릴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불치병이나 난치병 환자들의 희망이 서로 충돌된다. 환자를 돋기 위한 연구를 선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통해 배아를 죽이는 일은 배아를 해치는 일이다.

기왕에 남아있고 폐기될 잔여배아 혹은 애초에 일정 단계를 넘어 성숙한 인간 개체로 발달될 수 없도록 인위적 조작을 통해 만들어낸 배아를 사용한다 해도 도덕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돋는 선행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로 간주되지만, 다른 가치와 상충되거나 피치 못할 경우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절대적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인간생명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불가해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도덕원칙이다. 그러므로 불치병 환자를 돋기 위해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배아가 인간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법은 인간 생명을 최대한 수호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하느님은 사랑이고 생명이심을 믿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오로지 생명의 존중과 보호이다. 우리는 무고한 초기인간생명들을 죽음의 위기에 방치하는 현실을 결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부 생명공학자들의 주장대로 배아가 생명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면,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될 때까지 배아를 보호하는 것이 옳다. 인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살인을 감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는 무고한 인간생명을 살해하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됨은 물론이며, 더구나 그 생명이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가장 약한 초기인간생명이라면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 그것이 방금 생성된 배아이든, 냉동된 배아이든, 체세포복제배아이든 인간으로 성숙하는 길목에 있으며, 적어도 성숙한 인간으로 될 잠재력을 그 안에 지니고 있는 인간존재인 한, 국가는 그러한 무고한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생명 파괴를 전제로 하는 배아연구를 허용하거나 장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생명 윤리법은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생명과학 기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